

# 2021년도 삼육대학교 교직원 단체보험 제안요청서

## 1 가입대상 및 기간

가. 가입 기간 : 2021. 11. 09. 00:00~2022. 11. 08 24:00까지(1년간)

나. 가입 대상 : 본교 직원 및 교원 (총 473명)

구분	대상	인원(명)			평균연령(세)		비고
		남	여	합계	남	여	
교직원	본 인	292	181	473	51	46	인원변동 가능

※ 신규채용 및 퇴직에 의하여 가입대상자가 달라질 수 있음.

※ 계약기간 중 신규채용 및 퇴직에 의한 변동은 즉시 가입, 탈퇴할 수 있어야 하며, 보험료는 1인당 보험료를 산출하여 추후 정산

d

다. 보장 내역

구분	보장내용	지급금액
재해(상해)사망	재해로 인한 사망 시	3천 만원
재해(상해)후유장해	재해장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 시 장해등급별 지급율에 따라 지급	3천 만원
질병사망(일반사망)	질병으로 인한 사망	2천 만원
질병 후유장해	질병으로 인해 후유 장해 80%이상	2천 만원
수술비용	수술시(수술분류표에따라 지급)	30만원
암치료특약	일반암으로 진단 확정 시	1000만원
	갑상샘 및 경계성종양 30%	300만원
	기타피부암, 상피내암 10%	100만원
골절진단특약	재해를 원인으로 병원에서 골절로 진단 시 지급	20만원
입원 일당	질병, 부상 또는 출산 등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여 "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요양급여" 발생 시 입원일수 1일 당 지급(365일 한도)	2만원
뇌졸중진단	뇌졸중으로 인한 진단 시	1,000만원
급성심근경색	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 확정 시	1,000만원
상해 급여실손의료비 (입원/통원)	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. 상세: 하단 참조 - 비급여 항목 중 (도수치료/체외충격파치료/증식치료/주사료/자기공명영상진단) 보장제외	1,000 만 원 /10만원
상해 비급여 실손의료비 (입원/통원)	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. 상세: 하단 참조 - 비급여 항목 중 (도수치료/체외충격파치료/증식치료/주사료/자기공명영상진단) 보장제외	1,000 만 원 /10만원

4) 보험료의 납입: 월납(12분납), 소멸형

5) 기타

가) 우리대학 직원 전체인원을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
나) 보험계약 및 보험료 청구, 지급, 가입 변경자 통보 등 모든 행정사항은 주간사에서 처리.

- @ 급여 실손의료비

- 구분	- 보상금액	
- 입원 - (입원실료, - 입원제비용 - 입원수술비)	-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「의료급여법」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(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서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본인 부담금과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전액본인부담금을 말합니다.)의 80%에 해당하는 금액	
- 통원 - (외래제비용, 외래수술비, 처방조제비)	- 통원 1회당(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)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「의료급여법」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(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서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본인부담금과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전액본인부담금을 말합니다.)에서 <표1>의 '통원항목별 공제금액'을 뺀 금액 - <표1> 통원항목별 공제금액	
	- 항목	- 공제금액
	- 「의료법」 제3조 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(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은 제외),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·보건의료원·보건지소,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,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·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·조제(의약품업 예외지역 등에서의 약사의 직접 조제 포함)	- 1만원과 보장대 의료비의 20% 큰 금액
	-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2조 제2항에 의한 전문요양기관, 「의료법」 제3조의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, 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,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·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·조제	- 2만원과 보장대 의료비의 20% 큰 금액

- @ 비급여 실손의료비

- 구분	- 보상금액	
- 입원 - (입원실료,입원제 비용,입원수술비)	- '비급여 의료비(비급여병실료는 제외합니다)'(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)의 70%에 해당하는 금액	
- 상급병실료 차액	- 비급여 병실료의 50%. 다만,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,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.	
- 통원 - (외래제비용, 외래수술비, 처방조제비)	- 통원 1회당(외래 및 처방·조제비 합산) '비급여 의료비(비급여병실료는 제외합니다)'(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)에서 <표1>의 '통원항목별 공제금액'을 뺀 금액(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회를 한도로 합니다.) - <표1> 통원항목별 공제금액	
	- 항목	- 공제금액
	-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2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의료기관, 동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·보건의료원·보건지소,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,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·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·조제)	-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% 중 큰 금액

## 위내용은 요약 및 일부발췌 부분이며, 모든 보장내용은 감독기관 기준 및 약관에 따릅니다.

## 2 입찰 참가자격

- 가.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(경쟁입찰의 참가자격)에 해당하고, 동법시행령 제76조(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)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
- 나. 입찰공고일 현재 청산, 합병,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인 사업자와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관리 등을 신청 중인 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
- 다. 입찰공고일 현재 보험업법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(공제사업자보험 포함)을 영위하는 업체로 본사 또는 지점에 한함
- 라. 입찰공고일 기준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지급여력비율 150% 이상인 업체
- 마. 본 입찰은 공동수급(건설시업 구성)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되 공동수급체 모두 본교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,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, 업체별 공동수급체 중복결성 및 중복참여는 불가함.
- 바. 공동수급으로 입찰참가 시 대표사가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, 모든 행정 및 상담 관련 업무를 담당함
- ※ 모든 제출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의 서류만 인정(유효기간이 정해진 경우는 예외)하며,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
- ※ 공동수급방식 참여의 경우 공동수급체 모두 입찰등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.(단, 입찰참가신청서, 입찰이행보증금은 공동수급체 대표자만 제출)
- ※ 사본은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
- ※ 단, 입찰 등록 시 사용 인감 및 신분증 지참 요망.

## 3 입찰 서류 작성 및 제출 방법

- 가. 제출된 입찰 서류의 효력 : 제출된 입찰 서류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,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.
- 나. 입찰에 관한 서류는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.
- 다. 입찰서는 봉합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.
- 라. 제출한 입찰 서류는 취소, 철회, 교환 또는 변경할 수 없다.

## 4 낙찰자 결정

- 가. 예정가격 이하 총액(부가세포함)입찰 최저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.
- 나.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함.
- 다.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을 한다.

## 5 입찰보증금
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1항, 본 대학 물품구매규정에 따라 입찰금액의 5/100이상의 이행(입찰)보증보험증권을 입찰 등록 마감 시까지 본교 총무과에 제출하여야 하며,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 입찰보증금은 본 대학에 귀속됨.

## 6 입찰의 무효

- 가.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,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.
- 나. 입찰질서 문란 행위자(담합, 소란 등)

## 7 낙찰자 유의사항

- 가. 낙찰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- 나. 낙찰자가 납품의 위임 또는 양도 시 낙찰자 선정을 취소한다.
- 다. 낙찰자는 낙찰금액의 10%이상 계약이행보증금을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며, 낙찰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본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이때의 거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납기일까지의 계산 일수에 60일을 더한 기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
- 라. 납품 완료 후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(보증금률 10%)을 제출해야 한다.

## 8 기타사항

- 가. 제출서류 심사 후 통과 업체에 대해서만 입찰 진행
- 나. 본 입찰은 본교의 구매업무처리내규에 준용하여 모든 절차가 처리됨.
- 다. 업체 선정 후, 혹은 계약 이후라도 허위 사실 혹은 담합 사항 발견 시 무효 처리함.
- 라. 입찰 공고 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교가 정하는 바에 의함.
- 마. 발주처가 제시한 보험 가입조건과 보험사의 약관 또는 보상급여가 상이할 경우 발주처가 제시한 보험 가입조건을 조건 없이 적용함.
- 바. 공동수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, 공동수급 대표사를 지정하여 대표사가 보험계약, 보험료 지급, 가입 변경자 통보 등 계약자와의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행정·재정·법률적 책임 등을 대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(업무전담자를 지정하고 창구를 일원화함). 공동수급 대표사는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, 대표보험사가 계약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(파산, 해산, 부도 등)는 공동수급에 참가한 잔존 보험사에서 연대하여 책임져야 함.

## 9 문의

담당: 삼육대학교 총무인사팀 이성희

Tel. 02-3399-3454

Email. [hiyi1212@syu.ac.kr](mailto:hiyi1212@syu.ac.kr)

2021년 10월 13일

삼육대학교총장